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79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박용갑 · 문진석 · 박희승
정준호 · 한민수 · 소병훈
이연희 · 어기구 · 한준호
안태준 · 염태영 · 맹성규
윤종오 · 손명수 · 서삼석
최혁진 · 김영환 · 박상혁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총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금금을 계약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수사 의뢰됨.

또한, 해당 업체는 한국철도공사에 당초 한국철도공사가 제시한 중량 기준을 초과한 ITX-마음 차량을 납품하여 입석 승객 감소로 인한 운임 손실을 초래하는 등 차량 부실 제작 문제도 있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금 목적 외 사용 업체에 대해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 해당 업체와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함.

이에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해제·해지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능력평가, 적정한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의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등 계약업무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설계서”를 “설계서,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선급금”이라 한다)의 사용내역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설계서”를 “설계서, 선급금의 사용내역서”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선급금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계약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급금의 사용계획과 사용내역을 제출받아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 및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 결과 계약상대자가 해당 선급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급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지체상금)”을 “(지체상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

며,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어 입은 손해 중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계약을 이행할 때에 선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마. 계약을 이행할 때에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자

바. 최근 3년간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 지체에 따른 해지·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9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계약의 원칙)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5조(계약의 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평가, 적정한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의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등 계약업무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u>
제13조(감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① ----- ----- ----- ----- -----설계서,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선급금”이라 한다)의 사용내역서----- ----- ----- ----- -----.

② (생략)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검사) ① -----

-----설계서, 선급금
의 사용내역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선급금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제26조(지체상금) ① (생략)

<신설>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급금의 사용계획과 사용내역을 제출받아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 및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 결과 계약상대자가 해당 선급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급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지체상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

② · ③ (생략)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	<u>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어 입은 손해 중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u>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① ----- ----- ----- -----
--	--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 다.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

1. ~ 8. (현행과 같음)

9.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계약을 이행할 때에 선급
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
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마. 계약을 이행할 때에 제26
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
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한 자

바. 최근 3년간 제26조에 따
른 지체상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 ⑤ (생략)	<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것 으로 인정되는 자</u> ② ~ ⑤ (현행과 같음)
-------------------	---